

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개정(안) 대조표

| 구분 | 현행 | 개정(안)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
| 제1장 총칙 | <p>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”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“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(약칭 KIEEME)”라 한다.</p> <p>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사업)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회지, 논문지 및 도서의 발간 2.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. 조사 및 연구 4. 견학 및 시찰 5. 표준 및 규격의 제정 6.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7. 전기전자재료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동 활동 8.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학술 교류 9.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<p>제5조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주무관청)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 | (동일생략) |
| 제2장 제2장 회원 | <p>제6조(회원종류) 이 법인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 회원 :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법인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 또는 이와 관련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학식,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2. 준 회원 :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법인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3. 학생회원 : 학생회원은 이 법인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 | (동일생략) |



| | | |
|-----------|--|--------|
| | <p>의 대학원(석사과정), 대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.</p> <p>4. 특별회원 :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.</p> <p>5. 명예회원 : 이 법인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, 이 법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.</p> <p>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이 법인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다만, 준회원과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사 향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.</p> <p>제8조(입회) 이 법인의 정회원, 준회원, 학생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탈퇴)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탈퇴의 수속절차는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0조(회원의 제명)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비를 체납했을 때 2.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의무에 위반했을 때 3.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, 또는 법인의 목적에 유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| (동일생략) |
| 제3장 임원 | <p>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 사 : 40인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회장, 차기회장 : 각 1인 · 전문학술이사 : 25인 이내 · 부회장(학계) : 3인 이내 · 부회장(산업계) : 10인 이내 ■ 협력이사 : 약간 명 단, 상근이사 및 대우이사를 둘 수 있다. ■ 감사 : 2인 <p>제12조(임원의 임기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제13조 ①항의 1, 2호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평의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p>제13조(임원의 선출방법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하며, 회장 및 상근이사는 주무관청에 취임을 보고한다. (2009.7.20. 개정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차기회장, 부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평의회에서 선출하고,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회에서 선 | (동일생략) |

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
| | <p>출하며, 이사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는다. (2009.7.20 개정)</p> <p>2. 차기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선출절차는 따로 정한다. (2009.7.20 개정)</p> <p>②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회장 및 상근이사의 경우는 주무관청에 해임사실을 보고한다. (2009.7.20 개정)</p> <p>제14조(임원의 직무)</p> <p>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, 이사회,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차년도에 회장이 된다.</p> <p>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차기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p>⑤ 상근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.</p> <p>제15조(회장직무대행자)</p> <p>① 회장이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간 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직을 승계하고 그 다음 차기회장을 선출한다.</p> <p>제16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</p> <p>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</p> <p>2.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</p> <p>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,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는 주무부장관에 보고하는 일</p> <p>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</p> <p>5.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에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</p> <p>6. 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</p> <p>제16-1조(명예직) 회장은 이사회에의 동의를 얻어 본회 발전에 기여한 분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</p> <p>제16-2조(상임명예회장) 회장은 이사회에의 동의를 얻어 상임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</p> | <p>(동일생략)</p> |
| <p>제4장 총회</p> | <p>제17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</p> <p>1.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</p> <p>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3. 사업계획의 승인</p> <p>4. 예산, 결산 승인</p> | |

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
| | <p>5. 기타 중요 사항</p> <p>제18조(총회의 소집)</p> <p>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중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.</p> <p>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제19조(총회결의 정족수)</p> <p>① 총회는 정회원수의 1/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</p> <p>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</p> <p>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</p> <p>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p>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</p> <p>2.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</p> <p>3. 정회원 1/10 이상의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</p> <p>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③ ②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</p> <p>제21조(총회의결의 특례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1.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</p> <p>2.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</p> | (동일생략) |
| <p>제5장 평의원회</p> | <p>제22조(평의원회의 설치) 본회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.</p> <p>제23조(평의원회의 기능)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차기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선출 및 이사 선임안의 동의 (2009.7.20 개정)</p> <p>2.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안, 예산결산안, 정관 변경안의 동의</p> <p>3. 규칙변경안 및 지부설치의 승인</p> <p>4.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</p> <p>5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</p> <p>제24조(평의원 선출방법과 선출정족수)</p> <p>① 평의원회의 정족수는 100인 이상 150인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이 선출한다.</p> <p>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잔여기간에 한해서 보선할 수 있다.</p> | (동일생략) |

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
| | <p>④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25조(평의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)</p> <p>①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평의원으로서 이를 구성하며, 분기당 1회 정기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②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1/6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2009.7.20 개정)</p> <p>③ 임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 성원 및 의결정족수는 따로 정한다. (2009.7.20. 개정)</p> | |
| <p>제6장 이사회</p> | <p>제26조(이사회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 4.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.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6. 위원회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. 제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.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<p>제27조(의결정족수)</p> <p>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</p> <p>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 <p>제28조(이사회 소집)</p> <p>① 회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. 단,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으며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격월로 소집할 수도 있다.</p> <p>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</p> <p>제29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</p> <p>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.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<p>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</p> | <p>(동일생략)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 | |
| 제7장 재산 및 회계 | <p>제30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원의 회비 2. 찬조금 또는 보조금 3.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.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. 기타 수입금 <p>제31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.</p> <p>제32조(세입세출예산)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의 동의를 얻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</p> <p>제3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| <p>제30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원의 회비 2. 찬조금 또는 보조금 3.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.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. 각종 기부금 6. 기타 수입금 <p>제31조, 32조, 33조 (동일생략)</p> |
| 제8장 보칙 | <p>제34조(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제35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.</p> <p>제36조(정관개정)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제37조(규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38조(보고) 다음 사항을 소정기일 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(사업연도 개시 후 2월 내) 2. 매 사업연도의 수지결산(사업연도 종료 후 2월 내) 3. 주요업무 보고 및 사업실적(상, 하반기 종료 후 1월 내) 4.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보고(2주일 내) 5. 운영규정 등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(제정 또는 개폐 후 1주일 내) 6. 기본재산의 양도, 교환, 담보제공 또는 기채 등 중요 재산이 증감될 경우(변동 1주일 전) <p>제39조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. 총회의 소집 3.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| <p>제34조(회계의 공개)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</p> <p>제35조(해산) (동일생략)</p> <p>제36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</p> <p>제37조(정관개정) (동일생략)</p> <p>제38조(규칙) (동일생략)</p> <p>제39조(보고) (동일생략)</p> <p>제40조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. (삭 제) 3.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|
| 부칙 | 1.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다. | |



| | | |
|--|---|---|
|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2. 초대 평의원,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선출은 발기인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모든 평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1988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3. 본 개정 정관은 199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4. 본 개정 정관은 199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5. 본 개정 정관은 199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6. 본 개정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7. 본 개정 정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8. 본 개정 정관은 199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9. 본 개정 정관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0.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|
|--|---|---|